

### 3 철거·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확대(영§103의2)

#### 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·멸실된 날부터 <u>6개월</u> 이내의 토지	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확대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·멸실된 날부터 <u>1년</u> 이내의 토지

#### □ 개정 내용

- 사실상 건축물 등이 철거·멸실된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철거·멸실된 날부터 6개월 → 1년으로 확대

#### 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### 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3조(철거·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